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11 선고 2018가단94266(본소), 2020가단71976(반소) 판결
[공사대금 ·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도현택

변론 종결2020. 10. 14.

판결 선고2020. 11.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6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386,000원 및 그중 5,786,000원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2. 피고와 세종시 C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D'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위 단독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17,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직영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내역 변경과 추가공사 등의 사유로 수차례 변경되어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본공사대금 537,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9,000,000원 합계 566,000,000원으로 정해졌다.

다. 원고는 2017. 10. 10.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8. 8.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2017. 9. 27. 123,400,000원, 2017. 12. 21. 100,000,000원, 2018. 2. 12. 100,000,000원, 2018. 4. 13. 50,000,000원, 2018. 5. 2. 30,000,000원, 2018. 5. 14. 70,000,000원, 2018. 5. 21. 30,000,000원, 2018. 6. 23. 15,000,000원 합계 518,400,000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66,000,000원 중 518,4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는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서 보듯이 합계 92,700,000원 상당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9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의 위 손해배상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본소청구는 위와 같은 하자보수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하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566,0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518,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600,000원(= 566,000,000원 - 518,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사비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등 참조).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는 53,38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갑 제27호증, 을 제1, 9,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아래에서 불인정된 부분은 제외), 이 법원의 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아래에서 불인정된 부분은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 '하자목록표' 기재와 같은 미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비는 합계 53,386,000원(= 미시공 부분 12,388,000원 + 부실시공 부분 34,341,000원 + 기타 부분 6,657,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배치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본다).
[하자목록표]

미시공 부분
1
2
3
4
5
6

미시공 부분
7
8
소계
부실시공 부분
1
2
3
4
5
6
7
8
9
10
11
소계
기타 부분(공사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고 선집행비용 등)
1
2
3
4
5
6
7
8
9
10
소계
합계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53,38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공사대금 상당액인 47,600,000원의 범위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배상금 5,786,000원(= 53,386,000원 - 47,6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53,386,000원 및 그중 5,78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식